

전주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2가합4670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1. 29 선고 2013나388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2가합4670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 선고 2013. 10. 25.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8,861,580원 및 그 중 128,027,964원에 대하여는 2012. 7. 31.부터, 90,833,327원에 대하여는 2012. 7. 17.부터 각 2012. 8.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2. 4.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2. 5.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A에게,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20234호로 마친,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2. 5. 4. 접수 제2089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① 2008. 4. 15. 신용보증원금 12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4. 15.부터 2013. 4. 1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을, ② 2009. 5. 8. 신용보증원금 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5. 8.부터 2010. 5. 7.까지(그 후 2013. 5. 3.까지 연장 합의함)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피고 A이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대출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현재까지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계약 체결일에 피고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2008. 4. 16. 제1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150,000,000원을, 2009. 5. 8. 제2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피고 A이 그가 운영하던 주유소의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2. 5. 22.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7. 31. 국민은행에게 제1신용보증에 기하여 128,732,383원을, 2012. 7. 17. 신한은행에게 제2신용보증에 기하여 90,833,32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2. 7. 31. 제1신용보증의 대위변제금 중 704,419원을 회수하여,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289원($= 704,419\text{원} \times \text{연 } 15\% \times 1/365\text{일}$, 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다.

나. 결론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218,861,580원($= \text{제1신용보증 대위변제금 } 128,732,383\text{원} - \text{회수금 } 704,419\text{원} + \text{제2신용보증 대위변제금 } 90,833,327\text{원} + \text{확정손해금 } 289\text{원}$) 및 그 중 제1신용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128,027,964원($= 128,732,383\text{원} - \text{회수금 } 704,419\text{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2. 7. 31.부터, 제2신용보증 대위변제금 90,833,327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2. 7.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2. 8. 13.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2. 4. 3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2023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은 2012. 5.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5. 4. 접수 제20899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101,262,019원 상당의 별지 목록 순번1 부동산, 4,368,000원 상당의 순번2 부동산, 30,378,605원 상당의 순번3 부동산, 107,952,000원 상당의 순번4 부동산, 140,440,380원 상당의 순번5 부동산, 합계 384,401,004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한편,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8,170,008원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국민은행	283,114,787
2	D	30,000,000
3	전북은행	20,194,795
4	신용보증기금(원고)	218,861,291
5	E	10,000,000
6	한국외환은행	7,500,000
7	전북신용보증재단	5,809,154
8	F	20,000,000
9	G	5,000,000
10	신한은행	8,882,458
11	하나은행	18,807,523
12	H	10,000,000
합계	638,170,0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전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라.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 B,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B,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2005. 6. 30. 피고 A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 이율 연 12%(매월 30일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7. 8. 27.까지 합계 9,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은 주유소 매매시 미지급된 이자 9,0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최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는 2007. 8. 27.부터 2011. 3.까지는 매월 1,000,000원, 2011. 4.부터는 매월 9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1995. 3.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J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동생인 피고 A에게 1998. 7. 1. 위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피고 A은 위 주유소 양도대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2. 1. 31., 이율 연 12%(매월 30일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양도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고, 피고 C은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C의 각 주장과 같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2. 5. 22. 직전에 체결된 점, 피고 B, C이 주장하는 피고 A에 대한 각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위 피고들은 각 채권의 변제기까지 피고 A으로부터 대여금 또는 양도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A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은 피고 A의 누나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희

판사정종건

판사정서현

별지